

한-싱가포르 FTA 원산지 절차 요약

구분		한싱가포르 FTA	
발효일자		2006. 3. 2.	
협정국		싱가포르	
원산지 증명서	발급주체	싱가포르 - 세관 한국 - 세관, 상공회의소, 자유무역관리원	
	서식	양국지정 별도서식(양국 간 각자 증명서식)	
	유효기간	발급일로부터 1년	
	제출면제기준	미화 1,000불 이하	
소급발급		소급발급 시 "Issued Retroactively" 표기	
원산지 결정기준 (부호)	구분	싱가포르	한국
	완전생산	A	WOR (Wholly Obtained Rule)
	세변변경	B	CTC
	부가가치	C	VAC (Value Added Criterion)
	특정공정	D	
	역외가공	E	OP (Outward Process)
	개성공단	F	Gaeseung Products
	최소기준	G	De Minimis
부가가치 계산 방법	계산방법	공제법(BD : Build-Down Method)	
	부가가치 기준	45~55%	
	기준가격	FOB	
	비고		
역외가공	품목	4,625품목(HS 6단위)	134품목(HS 10단위)
	지역	개성공단	제한 없음
	가공비	한국에서 수출	역외 부가가치 40% 이하 역내산 재료비 45% 이상
제3국발행시 승장		직접적인 규정 없음	
원산지 검증	검증	검증방법	직접
		검증주체	수입국 세관
	회신	회신기간	30일(서면 요청 시)
		회신주체	수입자, 수출자, 생산자
	미회신 조치	협정관세 적용 제한	
근거조항	제5.7조		